

제10장 복리후생

<CONTENTS>

- 복리후생의 의미
- 복리후생과 임금의 비교
-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 (기업사례) e-제너두
-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 (참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복리후생(employee benefits and service programs)의 의미

- 종업원과 그 가족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간접적인 보상으로 임금 이외의 제 급부
-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보완해 주는 부가급부(fringe benefits)
- 복리후생의 특징
 - 제도적 의무화: 사회보장차원에서 조직이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과 퇴직금, 유급휴식제도 등은 제도적으로 의무화
 - 보상의 복잡성: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쉽게 알 수 있지만, 복지후생은 수혜자의 주체, 종류의 다양성, 복지후생의 성격 등에 따라 복잡한 지급과정을 거치는 일종의 패키지로 간접보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
 - 합법성의 딜레마: 직접 보상인 임금과 더불어 복지후생 역시 법적인 규제를 받지만 복지후생을 통한 간접보상의 범위와 영향은 임금과 같은 직접보상과는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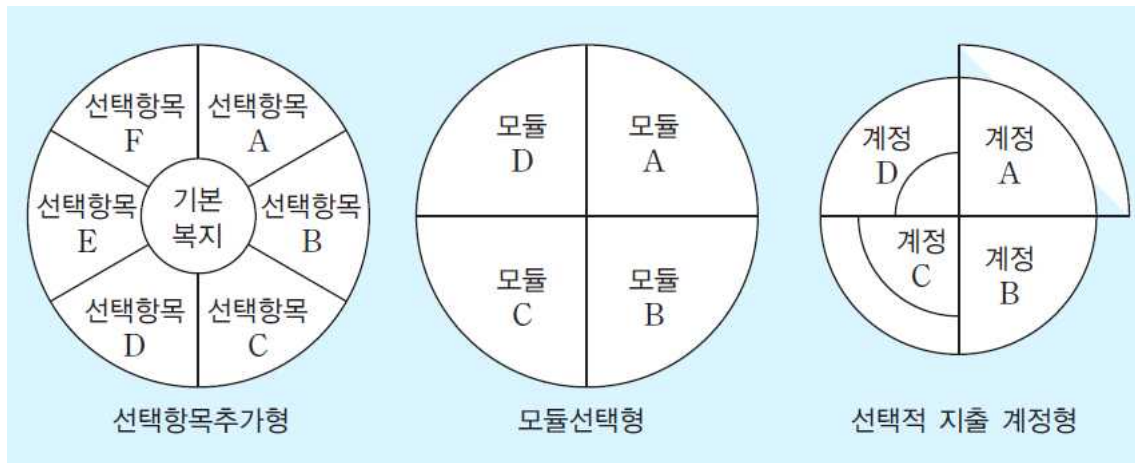
■ 복리후생과 임금의 비교

구분	임금	복리후생
보상 형태	금전적으로 직접으로 지급	간접적으로 지급 (건강 진단 등)
보상체계	개별 종업원 마다 차별적 지급	집단적으로 지급
보상요구	개별 종업원이 필연적 요구	종업원의 필요성의 의해 요구
보상효과	종업원의 경제적 이윤 창출	종업원의 심리적 만족감 ,사회공동체 의식 함양

■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 의미와 유형

-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메뉴 중 일정한 예산 하에서 종업원 개인의 니즈에 가장 적합한 복지항목과 수혜수준을 종업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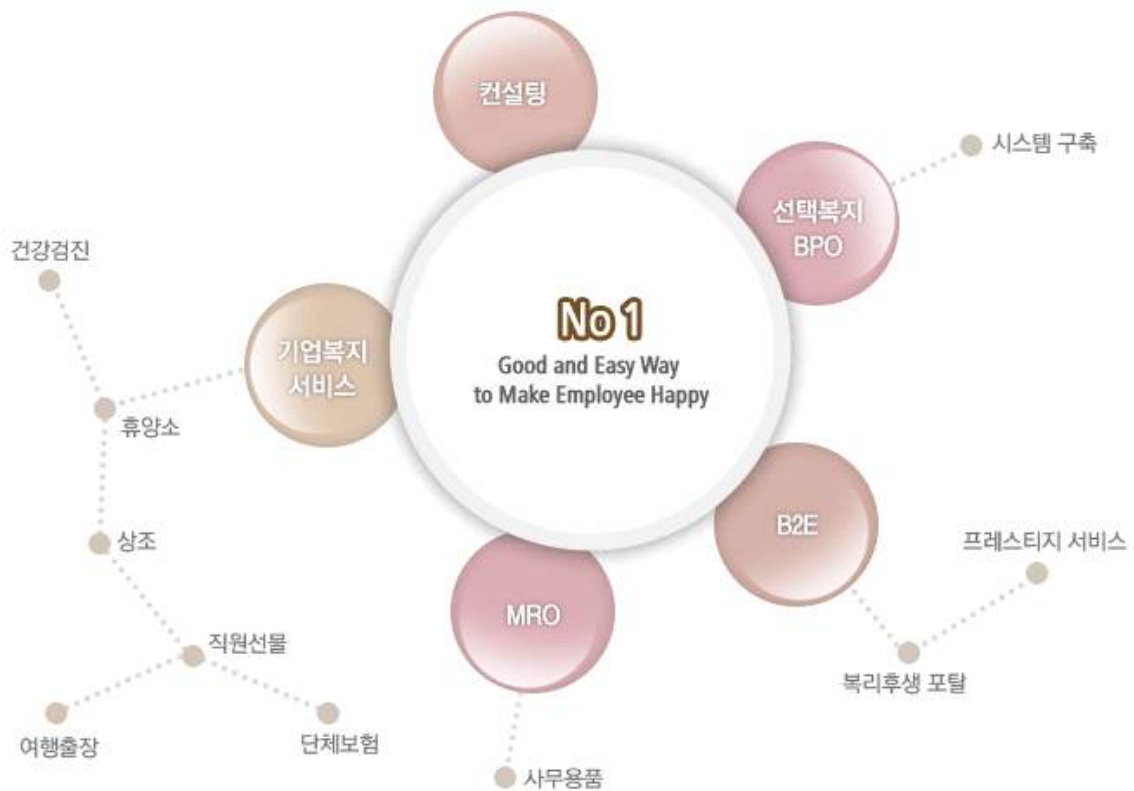
출처. 송계전, 박귀현(1997). 카페테리아식 복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LG경제연구원.

○ 특성

- 개인의 욕구중시
 - ▶ 제도와 설계와 운영에 있어 구성원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 유연한 복지제도
 - ▶ 기업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성원들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 참여복지제도
 - ▶ 복리후생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일반적으로 구성원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참여가 이루어진다
- 효율적 복지제도
 - ▶ 전체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 총체적 보상시스템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제도 운영에 있어 개인과 조직의 성과와의 연계 및 비용대비 효과를 중시한다

■ (기업사례) e-제너두

- 기업개요: 선택적 복지제도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를 비롯해 건강검진, 휴양소, 상조서비스 등 기업의 복리후생 부문을 토털 아웃소싱



출처. http://www.etbs.co.kr/login/exanadu/contents/company/05.jsp?sm=6_5

■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구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수급 조건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부터 평생 지급함. (*2013년부터 지급개시 연령이 매 5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에게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함.	가입중에 사망하거나 가입중의 장애연금 지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함.	가입기간 10년 미만(특례 노령 연금대상은 5년 미만)으로 60세에 달한 때나 국외이주 및 공무원이 되는 경우 등에 지급함.

○ 추종전략

- 임금수준을 경쟁기업의 일반적인 임금수준보다 낮게 정하고 일정한 기간의 격차를 두고 경쟁기업의 임금수준을 따라가는 전략임
-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인건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신규 종업원을 유인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참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전체)	근로자	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9.0%	4.5%	4.5%

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6만원에서 최고금액은 40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6만원보다 적으면 2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08만원보다 많으면 40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14.7.1. 기준)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5.99%	2.995%	2.9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6.55%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예) 보수월액이 991,600원일 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 991,600(보수월액) x 5.99%(건강보험료율) = 가입자 부담금 29,690원, 사업주 부담금 29,690원

장기요양보험료 : 59,380원(건강보험료) x 6.55%(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입자 부담금 1,940원, 사업자 부담금 1,940원

- 고용보험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2013.7.1 기준)		0.65%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출처.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InsuFeeMockCalcLayout.do>